

#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(안)

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2. 6.

조 달 청 장

## 1. 지정대상

□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2호 및 「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
## 2. 신청서류 제출기간

| 회 별   | 접 수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1 회 | 2024. 01. 10. ~ 2024. 01. 30. |
| 제 2 회 | 2024. 05. 07. ~ 2024. 05. 27. |
| 제 3 회 | 2024. 09. 03. ~ 2024. 09. 23. |

-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: 20분 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-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,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
- 신청서류 중 ‘반드시 제출’ 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. 다만, ‘반드시 제출’ 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‘반드시

제출' 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 (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)

### 3.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

□ 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

-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: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 ⇒ 조달업무 ⇒ 물품구매 ⇒ 우수제품 ⇒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⇒ 서식자료)

□ 제출처 :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(문의 : 070-4056-7449, 7228)

### 4.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

- 「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 규정」<조달청 고시 제2023-41호 (2023. 07. 21.)>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 된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음

### 5. 유의사항

- 해당 품목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, 독과점적 시장구조,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